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고 용 상 연 령 차 별 금 지 및
고 령 자 고 용 촉 진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고령자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의 실시 관련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한편, '19년 개정된 이직예정자 대상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의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향후 근로자의 비자발적인 이직시 사업주가 재취업지원과 관련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 구체화. 기타 법령 개정에 따라 권한의 위임 조항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규정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고령자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실시 관련 법적 근거를 구체화함(안 제9조의2)

나. 고용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중 신설된 사업 등을 반영, 현행화(안 제11조)

다. 이직예정자 대상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관련, 적용대상 사업주 및 대상근로자, 위탁기관, 서비스내용 및 제공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14조의2~4)

라. 사회적 일자리 창출 기관에 대한 지원,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원 관련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안 제15조제1항

제3의2, 5조의2)

마. 고령자 인재은행 지정기준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기준 시점을 '20년
으로 개정(안 제15조의2)

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규정을 신설(안 제15조의3)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의 실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법 제11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 법 제14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취업박람회를 운영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게 법 제11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조사와 연구업무를 위탁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 등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인력 양성을 위하여 훈련과정 개발 및 교육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교육훈련 등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의4제1항제7호에 따라 고령자 고용 우수 기업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연령 이상의 고령자의 고용 실적
2.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위한 계속고용조치 실적
3. 법 제21조의3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실적
4. 그 밖에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

⑥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절차, 지원수준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25조 및 제26조”를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 및 제28조”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재취업지원서비스의 의무적용 사업주 등) ① 법 제21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전년도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한다)의 수가 1,000명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1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자발적인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사유를 말한다.

1.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로 이직하거나 이직이 예정된 경우

2.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 중 또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이직하거나 이직이 예정된 경우. 다만, 해당 사업에서의 이직일 또는 이직예정일(이하 “이직예정일등”이라 한다) 이전의 피보험기간이 계속하여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공사의 종료 등으로 이직하거나 이직이 예정된 경우. 다만, 해당 사업에서의 이직예정일등 이전의 피보험기간이 계속하여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재취업지원서비스의 위탁) 사업주가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위탁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의3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4(재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재취업이 확정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

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이직예정일등이 50세 이상이 되는 연도 중일 것
2. 해당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이 이직예정일등 직전 계속하여 1년 이상일 것
3. 이직 사유가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② 사업주가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2. 취업 알선
3.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4. 그 밖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재취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③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이직예정일등 직전 3년 이내에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경영상 이유에 따른 퇴직, 희망퇴직, 권고사직으로 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직예정일등 직전 1년 이내 또는 이직예정일등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제3의2호 및 5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적 일자리 창출 기관 또는 단체에 대

한 지원

5의2.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
에 대한 지원

제15조의2에서 “2017년”은 “2020년”으로 한다.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고용노동부장관(법 제
23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
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
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의3에 따른 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에 관한 사무
2. 법 제23조에 따른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보고와 검사에
관한 사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 내지 제
14조의4, 제15조의3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대한 특례) 이 영 시행일 이후 6개월 이
내에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이직자
가 제14조의4 제3항의 기간 내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는 이직 후 6개월 이내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신 설 ></u>	<u>제9조의2(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의 실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법 제11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u> <u>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 법 제14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취업박람회를 운영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u> <u>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게 법 제11조의4제1항제4</u>

호에 따른 조사와 연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고령자 인재은행 등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인력 양성을 위하여 훈련과정 개발 및 교육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교육훈련 등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의4제1항제7호에 따라 고령자 고용 우수기업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연령 이상의 고령자의 고용 실적
2.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위한 계속고용 조치 실적
3. 법 제21조의3에 따른 재취업 지원서비스 제공 실적
4. 그 밖에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1조(고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고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5조 및 제2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정한 사항

⑥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절차, 지원수준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고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① -----

----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 및 제28조의4-----
-----.

제14조의2(재취업지원서비스의 의무적용 사업주 등) ① 법 제21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전년도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한다)의 수가 1,000명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1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자발적인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사유를 말한다.

1.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로 이직하거나 이직이 예정된 경우

2.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 중 또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이직하거나 이직이 예정된 경우. 다만 해당 사업에서의 이직일 또는 이직예정일(이하 “이직예정일등”이라 한다) 이전의 피보험기간이 계속하여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공사의 종료 등으로 이직하거나 이직이 예정된 경우. 다만 해당 사업에서의 이직예정일등 이전의 피보험기간이 계속하여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의3(재취업지원서비스의 위탁) 사업주가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위탁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의3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14조의4(재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재취업이 확정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이직예정일등이 50세 이상이 되는 연도 중일 것

2. 해당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이 이직예정일등 직전 계속하여 1년 이상일 것

3. 이직 사유가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② 사업주가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2. 취업 알선

3.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4. 그 밖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재취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③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이직 예정일등 직전 3년 이내에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제15조(권한의 위임) ① 고용노동
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 3. (생략)

< 신 설 >

4. ~5. (생략)

< 신 설 >

6. ~ 7. (생략)

제15의2(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
부장관은 제7조제1항 및 별표 1
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기준 등에 대하여 2017년 1월 1
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
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만 경영상 이유에 따른 퇴직, 희
망퇴직, 권고사직으로 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직예정일
등 직전 1년 이내 또는 이직예
정일등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
공하여야 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

1. ~3. (현행과 같음)

3의2.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사
회적 일자리 창출 기관 또는 단
체에 대한 지원

4 ~5 (현행과 같음)

5의2.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
른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
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6. ~ 7. (현행과 같음)

제15의2(규제의 재검토) -----

-----2020년-----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15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① 고용노동부장
관(법 제23조의2에 따라 고용노
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
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
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
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
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의3에 따른 퇴직에
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
스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23조에 따른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보고와
검사에 관한 사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
내지 제 14조의4, 제15조의3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대한 특례) 이 영 시행일 이후 6
개월 이내에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

	<u>이 되는 이직자가 제14조의4 제3항의 기간 내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는 이직 후 6개월 이내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연 락 처	044-202-7418